

보호자 여러분께

2025 년도 취학원조에 공지 (기타구립학교)

기타구교육위원회

기타구에서는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학 지원 심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2 페이지"2 취학 지원 신청 절차"(1)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 희망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출을 받았습시다만, 금년도부터,
 희망하는 분만 제출해 주세요.

1 취학원조를 받을 수 있는 분

- 기타구내에 살고 계시고 국공립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전기과정),
 특별지원학교(초등부, 중학부)의 아동 및 학생의 보호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1)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계신 분
 - (2) 인정일에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아동수당과는 다릅니다)
 - (3)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 모두의 총소득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분
 - (4) 특별한 사정으로 원조를 희망하는 분으로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
- ※ DV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학생이 조치비를 지급받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나 도의 양부모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 기준액(기준)】

이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학교의 전기과정을 포함한다.중학교는 의무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

가구구성		가구모두의 연간수입액 (급여 수입자)	가구모두의종합소득금액 (2024.1.1~2024.12.31)
2 인	부모(33 세) 자녀(초 1)	약 457 만엔	약 311 만엔
3 인	부모(37 세・32 세) 자녀(초 1)	약 499 만엔	약 345 만엔
4 인	부모(40 세・34 세) 자녀(중 1・초 3)	약 592 만엔	약 419 만엔
5 인	부모(50 세・45 세) 자녀(고 2・중 3・초 4)	약 642 만엔	약 459 만엔
6 인	부모(42 세・35 세) 자녀(중 1・초 3) 조부모(70 세・65 세)	약 689 만엔	약 500 만엔

※ 기타구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교육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기타구의 희망조서(신청서)는 "희망하지 않습니다"로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 신청 내용에 대해 학교나 교육위원회에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에 따른 소득의 확인에 관하여

① **2025 년 1 월 1 일현재 기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

교육위원회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실시하므로 소득확인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2024 년분 (2024 년 1 월 1 일~2024 년 12 월 31 일) 의 소득의 신고(동일 가구에서 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 이외의 분 전원)을 실시해 주세요.

소득이 없었던 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구약서세무과에서 소득이 없던 신고를 하세요.

② **2025 년 1 월 1 일현재 기타구이외 주민등록이 있는 분**

"2025 년도 시구정촌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를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2025 년 6 월초부터,1 월 1 일 현재 주소지 세무담당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자에게는 추후 통지를 송부하겠습니다.

※ 증명서에 소득금액과 피부양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출이 없는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없고 "부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넘버 이용에 대하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분으로 마이넘버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이넘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이용동의서" 는 좌측 QR 코드에서 기타구 홈페이지 "취학 원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우송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인정 결과 및 지급에 대해

(1) 인정 결과는 6 월 하순에 학생 주민등록지 가구주 앞으로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또, 재적하는 학교에도 인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원조비의 지급은, 원칙으로서 기타구립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연 5 회 지급일, 기타구립 이외의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연 1 회 3 월에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단, 학교 납부에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직접 교장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좌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하므로 7 페이지 "Q&A"의 No.13·14 를 확인해 주세요.

※인정 후 가구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사 중에는 원조비 지급이 일단 정지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소득초과로 부정인정이 된 경우에도 그 후에 가구상황이나 전년 중의 소득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혼이나 소득 수정 등). 단, 인정된 경우의 원조비 지급은 재신청한 달부터입니다.

4 취학 원조의 지급 내용

○학교 급식비 ○학용품 등 구입비 ○신입학 학생 학용품 등 구입비

○교외활동비(이동교실 등) ○통학비 ○동아리 활동비 ○체육 실기 용구비

○온라인 학습 통신비 ○학교생활관리지도표 문서작성비

●하계 시설 참가비 ●수학 여행비 ●졸업 앨범값 ●의료비 등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표의 비목은 생활복지과에서 지급되므로 ●표시된 비목만 취학원조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기타구립 초·중학교 재적자는 학교급식비가 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취학원조비에서 학교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입학용품등구입비는 입학전에 지급받으신 분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학교의 신입학 학용품등 구입비는, 초등학교 6 학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국공립 진학 예정의 분에게, 3 월에 입학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타구 어린이 의료비 조성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인정된 경우라도 모든 비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정된 분에게 통지하는 “지급 금액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생계유지자의 생활상황 급변 등(장기입원, 회사 사정에 의한 실업, 도산, 이재 등)의 특별한 사유로 전년 소득 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위원회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 모두의 취급에 대해서 >

취학 지원 신청 가구는, **원칙적으로 주민표상 가구원만(아동학생 포함 가구)** 입니다만, 아래의 경우는 가구에 포함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예외 1) 보호자가 일·돌봄(개호) 등의 이유로 별도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가구에 포함해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해당 보호자와 동가구인 분이 있는 경우는 그 분도 가구에 포함해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른 가구의 보호자가 구외 거주인 경우에는 주민표(가구 모두가 기재되어 있는 것)와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 - (2) - ②를 참조) 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외 2) 보호자가 주민표상 동 주소별 가구인 경우(가구분리 등)

가구에 포함해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예외 3) 보호자 이외가 주민표상 동 주소별 가구인 경우(동거 조부모등)

보호자가 동 주소별 가구를 “세법상”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가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다”란 세법상 부양에 속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청서에 부양하지 않은 분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구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예외 3 의 예)

기타구 오지 1-2-3 ○○님앞
부
모
본인

기타구 오지 1-2-3
조부
조모

이 경우 원칙은 3 인 가구(부·모·본인)로 신청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5 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4)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학생이 별도 가구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가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신청자 및 지원비 수령은 보호자가 됩니다. 단,학생이 있는 가구와 보호자 가구의 생계가 다른 경우에는 학생이 있는 가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신청자 및 지원비 수령은 학생이 있는 가구 분입니다.

또 다른 가구의 보호자가 구외 거주인 경우에는 주민표(가구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 - (2) - ②을 참조) 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4 의 예)

○○구 ○○ 1-1-1
부
모
형

기타구 오지 1-2-3
조부
조모
본인

이 경우 원칙은 6 인 가구(부·모·형·본인·조부·조모)에서 신청하며, 신청자 및 원조비 수령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됩니다.

부모와 생계가 다른 경우에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를 신청자(및 원조비 수령자)로 하여, 3 인 가구(할아버지, 할머니, 본인)로 신청해주세요.

※ 부, 모, 본인의 3 인 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 인 가구로 신청한 경우에도 통지 등의 송부처는 본인(아동학생)의 주민등록지 가구주 앞으로 보내게 되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신청 수속(4 월 30 일까지)

- ① 전자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QR 코드를 읽고 LoGo 폼 화면로 가주세요. QR 코드를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구 홈페이지 "취학 원조"에 첨부하고 있는 링크에서 가주세요.
- ② LoGo 폼에 가면 아래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입력화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入力フォーム

このフォームは、株式会社トラストバンクが提供する電子申請サービス「LoGoフォーム」へログインをして申請する必要があります。
下記の案内に沿って、次の画面に進んでください。

ログインして申請
すでにアカウントをお持ちの方は、ログインをして申請に進みください。

ログイン

新規アカウント登録して申請
アカウントをお持ちでない方は、アカウント登録をして申請に進みください。

アカウント登録でマイページをご利用できます

- ① 自分の申請履歴を確認できます。
- ② 氏名や住所などの登録内容を利用して、申請フォームへ自動入力できます。
- ③ 電子文書の確認や支払いが必要な申請もすぐわかります。

新規アカウント登録



電子申請
LoGoフォーム

※취학 지원 신청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어카운트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로그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카운트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분은 신규 아카운트 등록부터 아카운트 작성을 해주세요.
- 작성 시 신청하시는 학부모님 성함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로그인 후에는 입력화면에서 필요사항을 입력해주세요.

※신청자(보호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④ 입력 후에는, 확인 화면으로 진행해 입력 내용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⑤ 내용 확인을 마치면 보내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入力フォーム

入力 確認 完了

送信完了

ご入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受付番号: NS00002883 >

入力内容を印刷する

最初の画面に戻る

マイページの [申請一覧](#) から申請内容をご確認いただけます。

<신청 완료 화면>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 완료 메일이 도착합니다.
잘 보관해 두세요.

⑥ 인정 결과는 6 월 하순에 학생 주민등록지 가家主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연도 도중 신청의 경우, 인정 결과 통지까지 1~2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 문의처

〒114-8546 도쿄도 기타구 다키노가와 2 초메 52 번 10 호

기타구 교육위원회사무국 교육진흥부 학교지원과학사계

☎03-3908-1541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아침 8 시 30 분~저녁 5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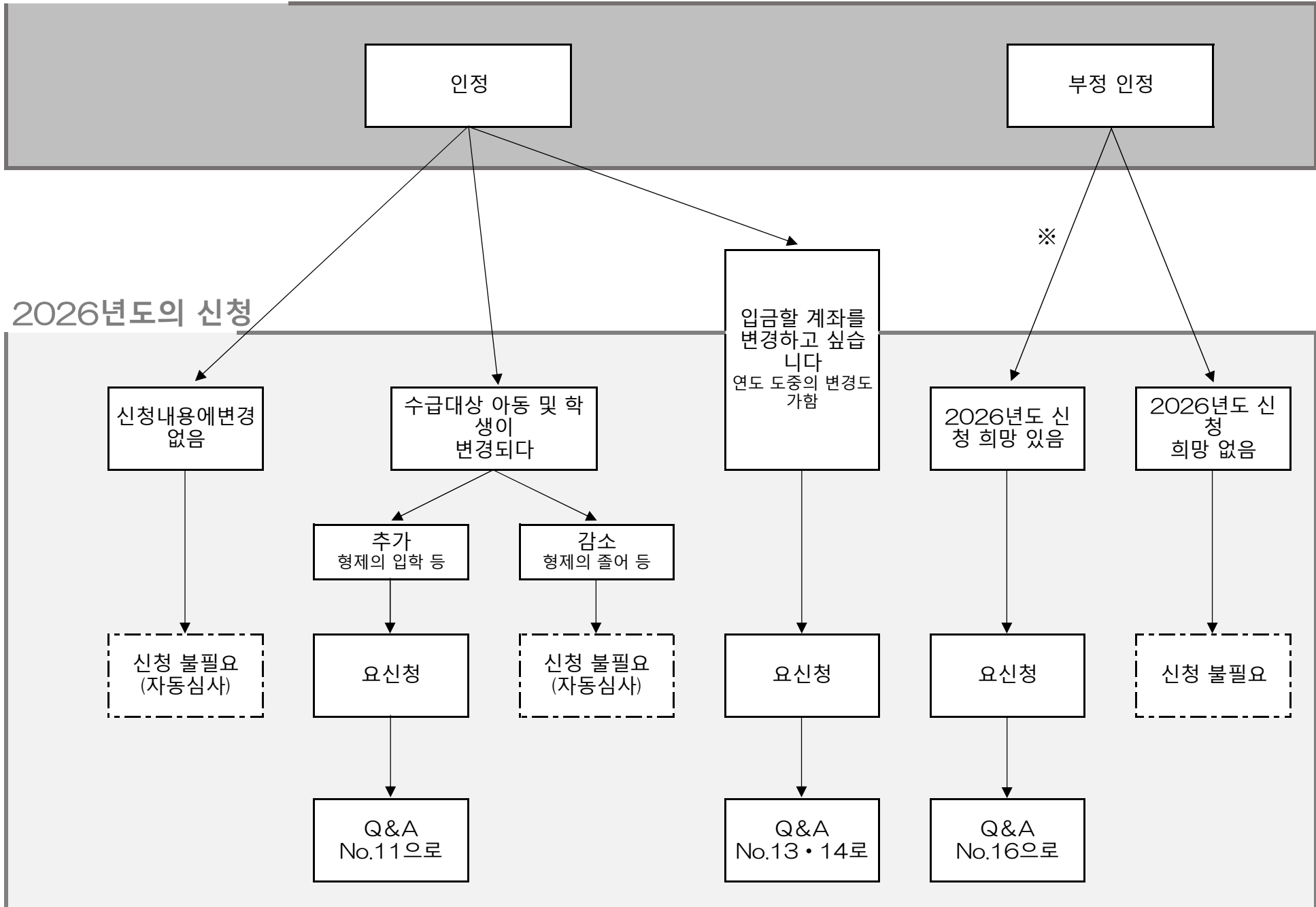
기타구 홈페이지
"취학원조"

◎다음 페이지에 가구 모두의 취급에 대해 기재하고 있습니다.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후의 신청에 대해 (플로차트)】

※ 한번 불인정이 된 경우에도, 가구 상황의 변경이나 소득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 내에서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A를 참조하십시오.

2025년도의 인정결과



【Q&A】

	질문	2025년 도인정결	No.	회답
신청	가구는 언제 시점의 가구 상황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연도 당초(4월)에 신청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학교 입학식 다음날(2025년4월9일) 시점의 가구상황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 일시점에서서의 가구 상황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인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주민표나 학적의 이동 정보를 참조해 취학 원조의 재심사를 실시합니다.
가구 상황의 변경	가구원 모두가 기타구내에서 이사해 아이의 전학이 결정되었다.	인정	2	구내 이전의 경우 인정을 받은 연도의 취학 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에,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기타구교육위원회에서 전학간 학교로 인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민표의 가구원이 줄었다. 예: 사회인 형만 기타구외에 전출	인정	3	매월 주민표나 학적의 이동정보를 참조하여,취학 지원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가구원의 일부 전출로 신청 가구 모두의 총소득금액이 인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알아두세요.
		불인정	4	가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신청 양식” 에서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구원이 1명 줄면 인정 기준액도 감액이 됩니다.
	주민표의 가구원이 증가했다. · 아이가 태어났다. · 기타구외 또는 기타구내 별 주소에서 가구원이 일부 전입했다 예: 타현에서 조부모가 전입	인정	5	출생이나 전년 12월말 시점에서 16세(고등학교 2학년) 미만의 가구원이 전입한 경우는,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전년 12월말 시점에서 16세(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가구원이 전입한 경우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청 양식” 에서 가구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구외에서의 전입의 경우 재신청 소득심사 시에 2025년1월1일 시점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치단체의 과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입자가 피부양자인 경우를 제외함) . “변경신청 양식” 에서 과세증명서 사진도 함께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인정	6	가구원이 1명 증가하면 인정 기준액도 증액됩니다.그 때문에, 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인정 결과가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신청 양식” 에서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인정된 경우의 원조비 지급은 재신청한 달부터입니다.
	보호자가 결혼했다.	인정	7	원칙적으로 보호자는 가구에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신청 양식” 에서 가구원 추가를 해주세요. 또, 새롭게 가족이 된 분이 기타구외에서 전입하는 경우,재신청 소득심사 시에 2025.1.1 시점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자치단체의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자가 피부양자인 경우를 제외함) . “변경신청 양식” 에서 과세증명서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불인정	8	가구원이 1명 증가하면 인정 기준액도 증액됩니다.그 때문에, 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인정 결과가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신청 양식” 에서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인정된 경우의 원조비 지급은 재신청한 달부터입니다.
	보호자가 이혼했다.	인정	9	신청자(원조비 수취인)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신청 양식” 에서 변경 후 신청자명으로 재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원조비 수취인)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신청자의 성이 주민표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저희 과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 동가구에 주민표가 있는 경우는, 가구에 포함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불인정	10	이혼이 완료되어 주민등록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신청 양식” 에서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2026년도에,막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다.	인정	11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년4월에 “변경신청 양식” 을 통해 수급신청 아동학생을 추가해주세요.
		불인정	12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2026년4월에 “신규신청 양식” 에서 재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자(원조비 수취인)를 변경하고 싶다.	인정	13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신청 양식” 에서 변경 후 신청자명으로 재신청해주세요.
	신청자(원조비 수취인)는 그대로, 입금계좌만을 변경하고 싶다.	인정	14	“변경 신청 양식” 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십시오.

【뒷면 있음】

【Q&A】

	질문	2025년 도인정결	No.	회답
기 타	한번 불인정 결과 통지가 왔는데 소득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고 싶다. 예 : 자영업을 위해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24년 중 소득에 오류가 있어 소득을 감액하는 신고를 하였다.	불인정	15	2024년 1월~12월 중 소득이 감액된 경우에는,재신청을 함으로써 인정결과가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신청 양식” 에서 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인정된 경우의 원조비 지급은 재신청한 달부터입니다.
	2025년도의 취학원조는 불인정이었지만 내년도 다시 신청을 하고 싶다.	불인정	16	2026년4월에 재적학교를 통해 취학원조 공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공지가 도착한 후에 “신규 신청 양식” 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
양식



변경
신청

問い合わせ先

〒114-8546 東京都北区滝野川2丁目52番10号

北区教育委員会事務局教育振興部 学校支援課学事係

(北区役所滝野川分庁舎1階5番窓口)

☎03-3908-1541 月～金曜(祝日を除く) 8時30分～17時